법무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. 5. 27.(화)

“「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」 마련”

- 법무부·법원·검찰·변호사업계·학계·스타트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**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** -

□ **법무부**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**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**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**‘로톡’ 사태**로 촉발된 **사회적 갈등을 해소**하고, **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**시키기 위하여, 2025. 5. 27. **「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(이하 ‘「가이드라인」’)」을 마련·공표**하였습니다.

○ **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**는 2023. 9. 26.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, **「변호사검색서비스**가 **변호사와 소비자에게 ‘연결의 장’을 제공**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**위법하지 않다」**고 판단하면서도,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, **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**한 바 있습니다.

○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**법무부·법원·검찰·학계**와 더불어 **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**을 받아 **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**들로 구성된 **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**를 출범하였으며,* **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**하여 이번 「가이드라인」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.

* 전체 위원 11인 중 법무부·법원·검찰·스타트업계 각 1인, 학계 4인, 변호사업계 3인

□ 총 20개조로 구성된 「가이드라인」은 **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** 된다는 **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** 및 **그에 입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**한 **세부 운영기준**을 규정하고 있는바, **주요 내용**은 아래와 같습니다.

「가이드라인」 구성

제1장 총론(제1조~제4조)
- 목적, 정의, 해석기준, 기본 원칙
제2장 세부 운영기준(제5조~제19조)
제1절 검색조건과 검색결과(제5조~제7조)
제2절 고지의무(제8조)
제3절 광고의 내용(제9조~제13조)
제4절 연락처등 제공 시 준수사항 등(제14조~제16조)
제5절 이용자의 평가와 후기(제17조~제19조)
제3장 보칙(제20조)
- 존속기간

○ **(총론) 운영자**가 변호사 관계 법령의 수범자인 '변호사등'이 아닌 경우에도 **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, 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「변호사법」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**됩니다.

- 따라서 운영자가 **변호사등과 제휴·이해관계가 있다는 오해**를 초래하거나, **과도한 광고비 책정 또는 법률사무 관여 등으로 변호사등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**하는 것은 **허용되지 아니**합니다.

※ 변호사등 또한 변호사 관계 법령의 수범자로서 운영자와 별도로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입니다(「가이드라인」 제13조).

○ **(검색조건)**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·횟수·기수와 같이 **정형적·객관적·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등을 검색**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**원칙적으로 허용**되나, 공직자등과의 연고관계처럼 **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**은 **금지**됩니다.

※ 예컨대 변호사의 공직 재직 경력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정보로서 검색조건으로서 허용되나, 이를 가공하여 산출한 공직자등과의 '인맥지수'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는 것은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금지됩니다.

- 또한 **개별·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 비정형적인 정보를 운영자가 가공·분석**하여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**'법조브로커를 통한 알선'**과 같으므로 **금지**됩니다.

○ **(검색결과 표시)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등**을 **상대적으로 선순위·상단에 정렬**하거나 **글꼴·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**하는 것은 유료 광고의 본질을 감안하여 **원칙적으로 허용**하되,

- **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**을 두는 것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**금지**하였습니다.

○ **(상담료·보수액 표시) 수임 전(前)** 변호사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**'상담료' 표시는 허용**하되,

- **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**을 전제로 **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**을 **사전에 표시**하는 것은 **금지**하였습니다.

※ 법률서비스는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고 가변적인 특성상 사전에 보수액을 일률적·정형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바, 보수액 표시를 허용할 경우 정보비대칭 해소에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염가에 일단 선임을 유도하는 '미끼'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.

○ **(전문분야 광고 등)** 변호사등에게 **'전문분야'를 표방하는 광고의 판매**를 원칙적으로 **허용**하되, 각 변호사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의 **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**하고,

- 이용자가 전문분야 광고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**각 변호사등이 구입한 전문분야 광고 목록과 분야별 실적 등을 공개**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**(이용자의 평가와 후기)** 변호사등의 법률서비스를 **실제로 경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용자에 한하여 평가를 게재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**'뒷광고' 및 '음해성 후기'를 방지**하는 한편,

- 객관적·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점 등 **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또는 '종합평가'를 금지**하였습니다.

※ 그 밖의 주요 내용은 [붙임] 참조

□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소관부처로서 **「가이드라인」을 관련 법규의 해석·판단기준으로 삼아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제**하는 한편,

○ **리걸테크**가 **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**하고 **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**하는 동시에 **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기여**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**최선을 다할 예정**입니다. ▨

[붙임] 「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」 주요 내용

[별첨] 「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」

담당 부서	법무실 법무과	책임자	과 장 이시전 (02-2110-3178)
		담당자	검 사 김유완 (02-2110-3923)
			법무관 박재경 (02-2110-3172)

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「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」 주요 내용

Ⅰ 총 론

1. 목적

❍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,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, 사법접근성 제고 위한 **변호사검색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기준 마련**

2. 정의

❍ ‘변호사검색서비스’, ‘운영자’, ‘이용자’, ‘(회원·비회원, 유료·무료 회원) 변호사등’, ‘검색조건’, ‘검색결과’, ‘정렬기준’, ‘광고비’ 등 **용어 정의**

※ **‘변호사검색서비스’**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닌 **실질 기준으로 판단**

- **종합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·프로필서비스나 법조인명록 사이트**도 **포함**
- 다만, **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**가 **공익적·비영리적 목적**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는 **「가이드라인」 적용** 배제

3. 해석기준

❍ 「가이드라인」 해석·적용 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**「가이드라인」의 명시적 언급 유무**만으로 **곧바로 허용 또는 금지**되는 것으로 **단정할 수 없다**는 점 명시

4. 기본 원칙

❍ ‘운영자’가 「변호사법」의 수범자가 아닌 경우에도, **관계 법령의 취지 잠탈**하거나, **변호사와 제휴·이해관계 있다는 그릇된 인상** 주거나, **변호사 등의 공공성·독립성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** 선언

Ⅱ 세부 운영기준

1. 검색조건과 검색결과

❍ 검색조건

- **정형적·객관적·가치중립적인 정보**(지역, 주요취급분야, 출신학교, 자격시험 유형·기수, 경력, 현 직장 등)는 검색조건으로 **허용**

※ **'검색필터' 등과 같이 무색무취한 정형적·객관적 검색조건**은 변호사등과 법률소비자를 직접 '연결'하는 것이 아닌 **'연결될 수 있는 장'을 제공하는 것**으로서 **원칙적 허용**

- 단, 객관적·가치중립적 정보를 가공하여 공직자등*과의 **연고관계 또는 '전관' 출신임을 부당하게 강조**하는 검색조건은 **금지**

* **「변호사법」 제30조**에서 규정하는 **재판·수사업무 종사 공무원**은 물론 **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**에서 규정하는 **'공직자등'까지 널리 포함**

※ **공직자의 동문·동기·전(前)동료 찾기 등의 서비스** 제공하거나 **'전관(前官)' 등 표현 사용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임을 노골적으로 암시**하는 행위 및 **'인맥지수'** 또는 **'친밀도'** 등을 산출하는 등 **수임 비리 조장하는 행위 금지**

- **개별·구체적 사건정보 가공·분석**하여 변호사등 검색하는 방식은 **금지**

※ **이용자가 문장 형태로 검색조건을 입력**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**검색조건 형태 간 변환**의 문제일 뿐 **각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를 참작한 것은 아니므로 허용** (예: 이용자가 검색창에 "물건 훔쳤을 때 변호사"라고 입력한 경우 '재산죄'를 전문분야로 등록하여 놓은 변호사등의 목록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)

❍ **검색결과의 정렬기준 및 표시**

- 검색결과는 **'무작위'** 등 **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**에 따라 정렬해야 하며, 그 **정렬기준**은 이용자에게 **공개**하여야 함

- **회원**을 **비회원**보다, **유료 회원**을 **무료 회원**보다 **선순위**에 두는 것은 **허용**되나, **유료 회원 간 광고비·상담료 순**으로 정렬하는 것은 **금지**

※ **미국·일본·독일 등 주요 외국**의 변호사검색서비스에서도 **유료 회원 우선 노출** 사례 多

※ 특정 분야 또는 키워드를 입찰에 부치고, 낙찰 가격의 순서로 변호사등을 선순위에 정렬하는 이른바 **CPC(Cost Per Click) 방식의 광고 금지**

- 운영자는 회원 변호사등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등에 대하여 표시의 **현저성**(글꼴, 크기) **등에 혜택**을 줄 수 있으나, **과도한 차등**은 금지

2. 고지의무

❍ 운영자는 검색결과 등이 객관적·가치중립적 사실의 표시가 아닌 **'광고'에 따른 것**이라는 점 등을 **이용자가 알 수 있게** 하여야 함

- 운영자는 변호사등의 서비스 **가입 또는 광고비 지불 여부** 등에 **따라 검색결과와 순위, 현저성에 차이** 두는 경우, 그 사실 **고지**하여야 함

※ **초기화면에 1회성 고지하는 것으로는 부족**하고, **검색창·검색화면별로 명확히 고지**하여야 함

3. 광고의 내용

❍ 상담료 표시

- 수임 전 초기 **'상담료'** 표시는 허용되나, **'보수액'** 표시는 **금지**

  ※ **법률서비스**는 모습과 유형이 다양하여 **보수액을 일률적·정형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**

- 다만,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」 제10조 제1항 취지 감안하여, **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상담료** 표시는 **금지**

- **'상담료'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범위는 명확히** 고지하여야 함

❍ 분야·키워드 표시

-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자체 설정한 **전문분야** 등을 **검색조건**으로 하거나 전문분야를 표방한 **키워드 광고**를 **판매**할 수 있음

- 다만, 그 개수는 **합리적인 범위로 제한**하여야 하고, **'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'와**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**구별**하여 표시하여야 함

  ※ 운영자는 **전문분야 광고**가 **유료 광고라는 점을 이용자가 인식**할 수 있도록 **명확히 고지**하여야 함(「가이드라인」 제8조, 제10조 제4항)

❍ 지역 표시

- 운영자는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**실제 근무하는 사무소 위치와 소속 지방변호사회** 등을 **표시**하도록 하여야 함

❍ 추천·배타성 암시문구 표시금지

- **'최고·제일·유일·우수·추천'** 등 추천·배타성 표현은 **금지**되나, 객관적으로 **검증 가능**한 지표를 과장 없이 표시하는 것은 **허용**

❍ 변호사등 본인의 책임

- **변호사등은** 운영자와 별도로 검색결과 및 프로필 등에 기재한 정보에 대하여 「변호사법」과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**관계 법령 준수의무 부담**

  ※ 「가이드라인」은 기본적으로 **'운영자'를 규제 대상인 수범자**로 하고 있으나, 그 외에 **'변호사등'** 또한 **광고의 주체**로서 **관계 법령 준수**하여야 함

4. 연락처등 제공 시 준수사항 등

❍ 연락처등 제공 시 표시의무 등

- 운영자는 이용자가 변호사등과 변호사검색서비스상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**전화·영상통화·안심번호**(050 번호 등) **등 연락처 제공** 가능
- 다만,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변호사검색서비스 통하지 아니하고 **이용자와 직접 상담**할 수 있도록 개인 전화번호 등 표시하는 것 **허용**하여야 함

❍ 변호사등의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시 운영자의 고지의무 등

- **운영자는 법률상담 서비스의 주체는 '운영자'가 아닌 '변호사등'이라는 점 이용자에게 두드러지게 고지**하여야 함

  ※ **운영자**는 이용자가 변호사등에게 문의할 수 있는 **연락처등을 제공할 뿐**이고, 구체적으로 **어떤 변호사등과 어떻게 상담할지**는 **이용자와 변호사등이 협의**할 사항

- 운영자는 **변호사등이 직접 상담하지 않은 사실** 확인된 경우 **대한변협 등에 통지**하고 **일정한 제재** 가하는 등 **'명의대여'나 '사무장 상담' 방지 위하여 노력**하여야 함

❍ 변호사등의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

- 운영자는 **이용자** 상대로 **변호사등과의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** 요구·수취 **금지**

  ※ 변호사검색서비스 본연의 기능에 따른 '광고비' 등 대가는 수취 가능

- 운영자가 **변호사등으로부터** 연락처등 제공 시스템 유지 위한 **정액의 실비** 받는 것은 **허용**되나, **상담료·수임료 등 보수** 분배는 **금지**

  ※ 예컨대 **이용자가 지급한 대가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잔액만을 변호사등에게 지급**하는 행위 금지

5. 이용자의 평가와 후기

❍ 이용자 평가의 게재 방식

- 법률서비스 **실제로 경험한 이용자**가 평가·후기 작성하는 것은 **허용**되나, 별점·점수·등급 등 **수치화된 방식의 평가**나 **종합평가 금지**

❍ **이용자 평가에 관한 운영자의 관리의무**

- **법률서비스 경험하였음이 검증된 자**에 한하여 평가등 게재 **허용**
- 작성자 동의 전제로 평가등 수정·변경 없이 공개 가능하나, **위법·부당한 내용**이 포함된 경우 **수정·변경요청 또는 삭제·불게재** 가능

❍ **변호사등이 자기에 대한 평가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**

- **변호사등은** 평가등으로 권리 침해받은 경우, 운영자에게 **삭제나 반박글 게재 요청** 가능
- **운영자**는 권리 침해 여부 판단 어려울 경우 평가등 **임시차단** 가능

Ⅲ 보 칙

❍ 「가이드라인」은 법령이나 기술발전 등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**개정 「가이드라인」 공표되는 시점까지 유효** ▨